

2022 하반기

# 달라지는 관세행정

# 01 시내보세판매장(면세점)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도입

## 종 전

□ <신 설>

## 달라지는 내용

- 시내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허용
  - 외국인이 국내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 
시내보세판매장(면세점) 운영인이 운영하는  
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산품을 구매 가능토록 허용
  - [대상물품] 국산품
    - \* 타법령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물품 및 환급대상 내국물품 제외
  - [판매한도] 없음
  - [판매대상] 해외 거주 외국인
    - \* 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인
  - [배송지] 외국

**기대효과** 면세점의 판매 채널 확대를 통한 국산품(K-Brand) 수출 증대

**시행일** 시스템 구축 등이 완료된 업체별로 **6월부터 사업 시행**  
\* 「시내보세판매장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운영 지침」 제정



# 02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시행

## 종 전

□ <신 설>

## 달라지는 내용

□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

· [등록의무 대상요건]

- ① '통신판매업자\*'로 신고한 자 중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,  
\*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항에 따라 등록된 자
- ②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

※ 다만, 구매대행한 수입물품 가격이 총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가능

**기대효과**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·감독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 보호 및 통관질서 확립

**시행일** '21. 7. 1. [등록유예: ~ 2022. 6. 30.]  
\* 「관세법」 개정



# 03 먹거리·산업원자재 중심 14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등

## 종 전

- 할당관세 대상품목
  - <신 설>
- 할당관세율
  - 나프타 제조용 원유 (0.5%)
- 조정관세 대상 품목
  - 나프타 (0.5%)
- 할당관세 적용기간
  - 계란 가공품, 요소('22년 6월 30일)
- 할당관세 한계수량
  - 사료용 근채류(70만톤)

## 달라지는 내용

- 할당관세 대상품목 확대
  - 돼지고기, 밀, 밀가루, 대두유, 해바라기씨유, 페로크로뮴, 망간, 인산이암모늄, 전해액 첨가제
- 할당관세율 추가 인하
  - 나프타 제조용 원유 (0.5→0%)
- 조정관세 대상품목 종료
  - <삭 제> [기본세율 0% 적용]
-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
  - 계란 가공품, 요소('22년 12월 31일)
- 할당관세 한계수량 확대
  - 사료용 근채류(100만톤)

**기대효과** 할당관세(0% 등 저세율) 적용품목 신규 지정 및 적용기간 연장 등을 통해 관세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기여

**시행일** '22. 6. 22.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\* 「관세법 제기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」 개정  
「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」 개정



# 04 커피,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

## 종 전

□ 커피, 코코아두 등\*에 대해서는  
부가가치세 과세

\* HS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(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은 제외한다) 및 커피의 껍데기, 껍질과 웨이스트(waste)  
HS 제1801호 코코아두(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)  
HS 제1802호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,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(waste)

## 달라지는 내용

□ 2023년 12월 31일까지  
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면세

**기대효과** 커피,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 
국민 기호식품에 대한 물가안정 지원

**시행일** '22. 6. 28.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
\*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개정

**TAX FREE**





관세청

# 05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한시적 확대

## 종 전

- 단순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
  -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·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에서 제외 → 과세하고 있음

## 달라지는 내용

- 면제범위 확대
  -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·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까지 면세

**기대효과** 단순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포장 구분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물가안정 지원

**시행일** '22. 7. 1.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\*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개정



# 06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30% 인하 적용기간 연장

## 종 전

-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5%  
→ 3.5%로 인하하여 적용
- 유효기간: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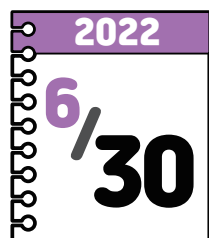
## 달라지는 내용

- 탄력세율 유효기간 연장
- 유효기간: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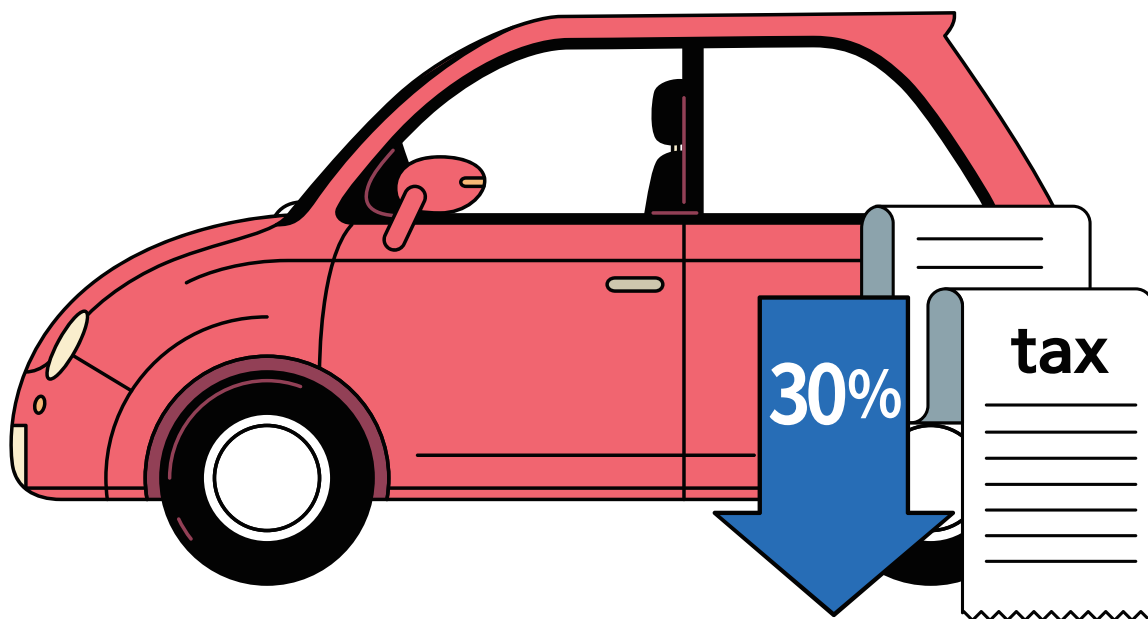
**기대효과**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

**시행일** '22. 7. 1.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\*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부칙(제31383호) 개정



연장



# 07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

## 종 전

□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

· 킬로그램당

275원 → 193원

※ 적용기간: 2022년 7월 31일까지

## 달라지는 내용

□ 탄력세율 추가 인하

· 킬로그램당

리터당 275원 → 176.4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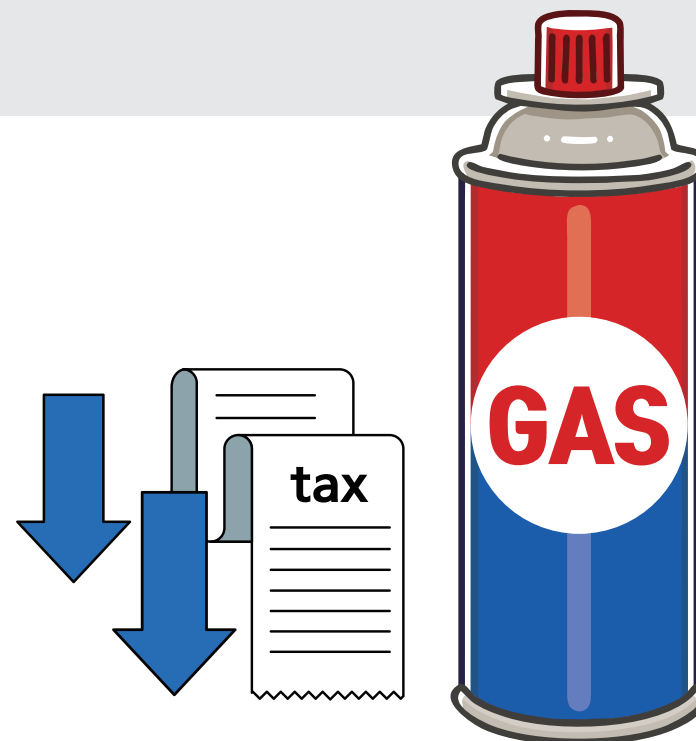
※ 적용기간: 2022년 12월 31일까지

수입신고하는 분

**기대효과**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하여 물가안정 지원

**시행일** '22. 7. 1.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\*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개정





# 08 휘발유,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 추가 인하

## 종 전

□ 탄력세율 적용

· [휘발유 등]

리터당 529원 → 370원

· [경유 등]

리터당 375원 → 263원

※ 적용기간: 2022년 7월 31일까지

## 달라지는 내용

□ 탄력세율 추가 인하

· [휘발유 등]

리터당 529원 → 332.5원

· [경유 등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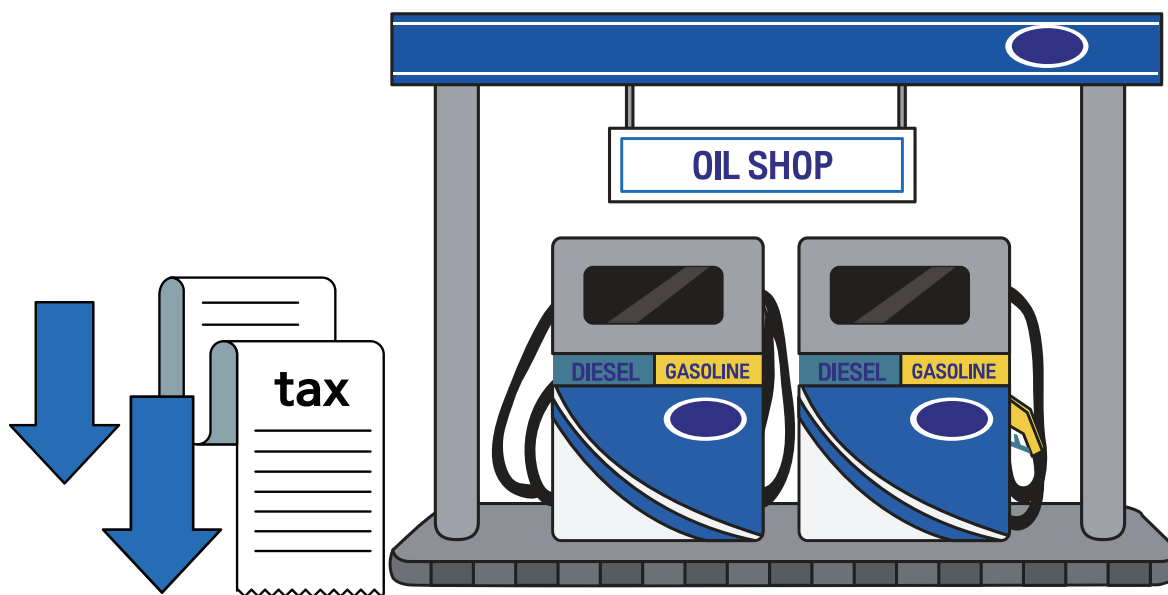
리터당 375원 → 238원

※ 적용기간: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

**기대효과**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하여 물가안정 지원

**시행일** '22. 7. 1.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\*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」 개정



# 09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를 RCEP에도 확대 시행

## 종 전

□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운영

- 간이확인 적용 협정
- 아세안, 베트남, 중국 및 인도
- < 추 가 >

## 달라지는 내용

□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\* RCEP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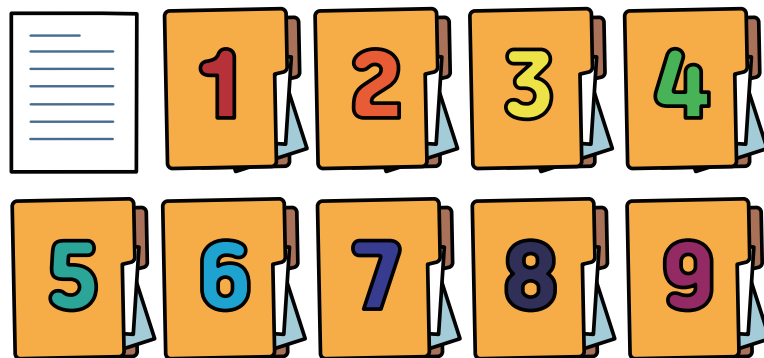
- \* 국내 제조·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 
[관세청장 고시로 지정]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시 입증서류 제출 간소화
- 간이확인 적용 협정 확대
- < 좌 동 >
-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
- : 255개 품목

**기대효과** RCEP 활용 수출·제조 기업의 원산지 증빙절차\* 간소화

\* [제출서류]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9종 → 국내제조확인서

**시행일** '22. 5. 10.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,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\*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



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9종



국내제조확인서

# 10 국민안전 밀접 물품의 유통이력신고 대상 지정 연장

## 종 전

-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(5개\*) 지정 종료
- 2022.7.31 종료
- \*에이치형강, 플랜지, 맨홀뚜껑, 자동차 휠, 연석

## 달라지는 내용

-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(3개\*) 지정 연장
- 2022.8.1~2024.7.31 연장
- \*에이치형강, 플랜지, 맨홀뚜껑

**기대효과** 국내 유통 질서 교란 우려가 있는 국민안전 밀접 품목은 유통이력관리 대상으로 재지정하여 사회 안전과 국내 소비자 보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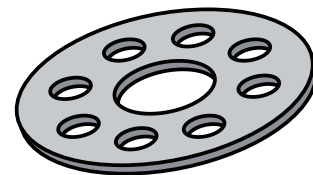
**시행일** '22. 8. 1.  
\*「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



에이치형강



맨홀뚜껑



플랜지

